

공 고

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8-23호

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제2008-173호(2008.05.22)로 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호(2017.1.26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, 서울특별시은평구고시 제2015-34호(2015.5.21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,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내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 도서가 제출되어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31조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42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에게 관계서류를 아래와 같이 공람하고, 의견 청취하고자 공고합니다.

2018년 1월 11일
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

가. 공람기간 : 2018. 1.11 ~ 2018. 1.25(14일간)

나. 공람 및 의견서 제출 장소

- 1) 은평구 도시계획과 (☎ 02-351-7423)
- 2)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☎ 02-303-1794)

다. 공람내용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

라. 사업시행(변경)인가 신청내용

- 1)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- 2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동 412일대(면적 : 31,793.6㎡)

3)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- 성명 : 수색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송대식)
- 주소 : 서울특별시 은평구 수색로256(수색동) 2층

4)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
5) 사업시행인가일 : 2015년 5월 21일

6) 건축계획 : 공동주택 8개동 649세대(임대 112세대포함), 지하3층/지상22층 및 부대복리시설

7) 변경내용

○ 사업시행면적 변경

- 당초 : 31,793.60㎡
- 변경 : 31,796.60㎡

※ 변경사유 :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8(2017.1.26)호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에 따른 변경

○ 계약면적(지하주차장)변경 : 지하주차장 면적 근생시설 및 사회복지시설에 분배

- 지하주차장 총면적 및 주차대수 변경 없음(상세내역 관계도서 참조)

○ 정비사업비 및 자금계획 변경

- 당초 : 172,741,863,000원
- 변경 : 193,241,122,510원

○ 수용 또는 사용대상 토지 및 건축물 정정 : '사업시행변경인가 관계도서 참조'

8) 기타사항 : 사업시행(변경)인가를 위한 관계도서 참조

마. 기타사항

- 1) 주민 편의를 위하여 은평구청 도시계획과 및 해당 조합사무실에 관련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, 본 공람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해당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분은 공람 기간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공람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